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6. 30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6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6월 2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2회(제1차 정례회) 제2차 위원회(2001. 6. 30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사유
  -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 연장
- 나. 주요골자
  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
    -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“2001년 6월 30일”을 “200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대완)

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행정기구보강방침에 의거 행정관리국 산하에 자치행정과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,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이관사무 수행과 대민행정 등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각 구청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당초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는 한시적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연장승인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업무지침에 따른 내용으로써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주민복지센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며, 2002년 한·일 월드컵 행사에 대비한 광고물정비와 효율적인 관리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6. 20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 연장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

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“2001년 6월 30일”을 “200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련근거 :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 (서울시 행정 13101-2625 : 2001. 6. 15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
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**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“2001년 6월 30일”을 “200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부 칙**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)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  
=====

현	행	개 정 (안)
부 칙(2000. 11. 27)		부 칙(2000. 11. 27)
제1조(생략)		제1조(현행과 같음)
제2조(자치행정과 존속시한) 자치행정과의 존속 시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	제2조(자치행정과 존속시한) 자치행정과의 존속 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